

글로벌 기술사업화 플랫폼 지원사업 수행기관 모집 재공고

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은 연구개발특구 소재 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『글로벌 기술사업화 플랫폼 지원사업』 계획을 아래와 같이 재공고하오니 본 사업에 수행기관으로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자는 관련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18년 08월 31일
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이사장

1. 사업목적

□ 해외의 기술사업화 수요를 발굴·고도화하여 이를 기반으로 목적지향형 특구기업 글로벌 진출·성장 지원

* 특구기업이 보유한 기술·제품에 대한 해외수요를 찾아 지원하는 기존 공급자 중심 방식의 한계를 극복할 ‘수요 중심 글로벌 기술사업화 플랫폼 지원’ 필요



2. 사업개요

□ 사업명 : 글로벌 기술사업화 플랫폼 지원사업

□ 사업기간 : 협약 체결일로부터 12개월('18.9월~'19.8월 예정)

□ 사업예산 : 정부출연금 500백만원 이내(1개 수행기관 선정)

* 비영리기관이 아닌 기업의 경우 민간부담금(현물+현금) 매칭 필요(세부내용 '4.요청사항-사업비' 참조)

□ 진출대상지역 : 북미, 중국, 동남아시아*를 제외한 전 지역

* 특구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존 글로벌 액셀러레이팅 지원사업(북미, 중국, 동남아시아)과 사업대상 지역이 겹치지 않는 중남미, 중동, 아프리카, CIS 국가 등 신흥국 시장 위주로 설정

□ 사업내용

- 해외 기술사업화 수요 발굴 및 고도화
- 수요에 부합하는 특구기업 발굴, 글로벌 진출역량 진단·분석, 해외 기술사업화를 위한 비즈니스모델 개발 컨설팅 제공
- 해외 기술수요자-특구기업 간 비즈니스 미팅 기회 제공 및 해외 기술사업화 관련 계약 프로세스 솔루션 지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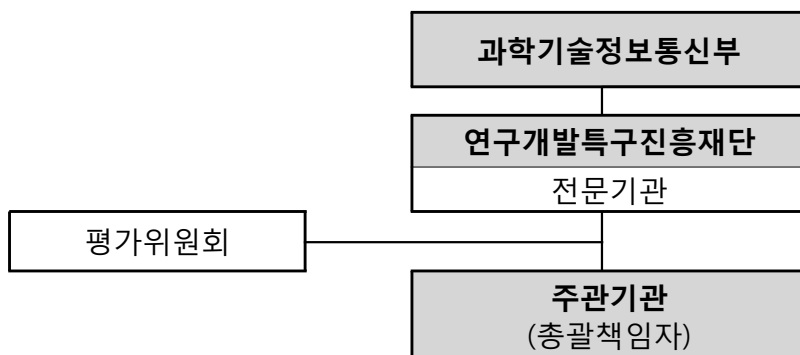
□ 지원자격 : 국·내외 네트워크를 활용해 글로벌 기술사업화 수요발굴 및 특구기업의 해외진출 성과를 도출할 수 있는 **국내법인** 또는 **국내법인 컨소시엄**

* 해외법인은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으로 참여 불가

** 국내법인 컨소시엄 참여시,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간 역할분담 및 사업비 집행계획(민간 부담금(현금·현물) 부담계획 포함)을 제시하여야 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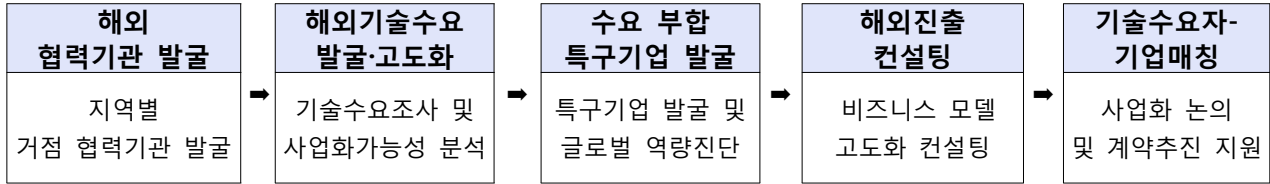
□ 선정방식 : 공개경쟁 모집을 통해 과제수행 기관 결정

□ 추진체계



3. 사업내용

□ 세부업무내용



- **(해외 협력기관 발굴)** 해외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신뢰할 수 있는 지역별 거점협력 기관(정부기관, 산업협회, 기업, 투자자 등) 발굴
 - 협력국가(기관) 발굴시 해당국 시장 성장 전망 등 국별분석 및 특구와 기술사업화 협력 적합성(특구별 중점 산업분야 등) 종합적으로 고려
- **(해외 기술수요 발굴 및 고도화)** 해외 현지 기술수요자 및 기술사업화 프로젝트를 발굴 하여 사업화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기술수요 고도화 추진
 - 현지의 잠재적 기술수요자(정부 유관기관, 민간기업, 투자자 등) 미팅·인터뷰 실시
 - 현지의 기술수요를 산업 분야별·개발 단계별로 분류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추가 수요 정보 상시 업데이트, 확보된 기술수요의 사업화 가능성 분석 및 고도화
- **(수요에 부합하는 특구기업 발굴)** 해외 수요기술에 부합하는 기술/제품을 보유한 특구기업 Pool을 확보하여 글로벌 진출 역량 진단·분석 실시
 - 특구 통계자료, 특구기업 수요조사, 전문가 자문 등 적극 활용
 - 특구기업 보유 기술/제품의 해외진출 역량진단을 위한 객관적 평가지표 구축
- **(해외 진출 컨설팅)** 해외 진출 유망 특구기업 대상 해외 비즈니스 파트너 발굴 및 비즈니스 모델 고도화 컨설팅 지원
 - 특구기업과 기술점검 회의를 통해 기술 타당성 조사 및 글로벌 기술사업화 아이템 고도화
 - 필요시 특구내 대학, 연구소 및 기타 유관기관 등 분야별 전문가와 협업하여 자문제공
- **(기술수요자-기업매칭)** 해외 비즈니스 파트너 발굴·매칭 및 사업화 협의 지원을 통한 해외 매출 계약 등 실질적 성과 도출
 - 글로벌 기술사업화 협의 개시를 위한 비즈니스 미팅(특구기업 현지 방문 또는 현지 파트너의 한국 방문) 지원, 진출 대상지역 주요 전시회/기술이전 설명회에 특구기업 참여 지원
 - 특구기업의 글로벌 기술사업화 프로젝트 수주 또는 관련 해외 매출(수출 등)계약 추진 과정 중에 필요한 전문가 자문 서비스 제공

4. 요구사항

□ 성과목표

구분	세부 내용
필수목표	○ 해외 수요 기반 특구기업 글로벌 진출지원의 우수성을 나타내는 정량지표 - 해외 기술수요 발굴 & 고도화 건수 : 50건 이상 - 해외 진출 컨설팅 수혜 특구기업 수 : 20개사 이상 - 글로벌 수요와 매칭이 성사된 특구기업 수 : 10개사 이상 - 지원한 특구기업의 글로벌 기술사업화 관련 계약 실적 (신청기관에서 목표치 제시)
기타목표	○ 필수목표 외 사업수행의 우수성을 나타내는 수행기관 자율지정 목표 - 예시1) 현지정부, 유관기관 및 기업과 협력관계 구축: MoU 또는 LoI 신규체결 3건 - 예시2) 글로벌 B2B 워크숍 개최: 2회

* 성과목표치(필수, 기타)는 평가위원회의 평가에 따른 권고내용을 반영하여 협약 체결 전 협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.

** 사업수행 완료 후, 최종성과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은 필수이며, 해당 증빙의 실효성 여부는 최종평가시 평가위원회에서 결정.

□ 제출자료

구분	세부 내용	제출 부수	제출일자
월간보고서	월별 사업추진실적 및 차월 추진계획	월간보고서(전자파일)	월 1회
최종결과보고서	본 사업으로 수행한 기업지원 내용 및 성과목표 달성결과 일체에 대한 자료 및 증빙	최종결과보고서(10부+전자파일) 발표자료PPT(10부+전자파일)	협약기간 종료 후 45일 이내
정산보고서	전체 사업비(정부출연금+민간부담금) 사용내역 및 증빙자료	회계감사보고서(1부+전자파일) * 특구재단 지정회계법인의 감사를 필한 보고서	협약기간 종료 후 3개월 이내

* 필요 시 재단 결정에 따라 현장실사 또는 사업수행 점검회의를 상시 진행할 수 있음.

□ 인력 구성

- (참여 인력) 총괄책임자, 상근·전담 관리 인력(2인 이상) 등으로 구성되며, 모든 참여 인력은 신청마감일 기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5과제 이내로 참여(본 사업 포함)
 - 총괄책임자 : 사업총괄·운영자로서 본 사업 수행에 전념할 수 있어야 하며, 신청 마감일 기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3과제 이내(본 사업 포함)
 - 상근·전담인력 : 최소 2인 이상의 상근·전담 인력이 투입되어야 하며, 협약기간 중 타 사업 수행으로 동 사업 수행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됨
- * 참여인력 중 특구재단의 요청에 전담 대응할 인력 1인(실무책임자) 지정 필수
- (외부전문가 활용) 수행기관은 참여인력과는 별도로 해외 기술수요조사 및 해외진출 관련 분야의 국내·외 전문가 Pool을 구축하고 전문가 활용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

□ 사업비

- 사업운영에 필요한 비용, 특구기업이 본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(예: 해외 프로그램 참가를 위한 특구기업의 항공, 숙박 등 체제비) 및 후속지원 관련 비용 등 일체를 포함
 - * 수행기관은 본 사업 수행기간 중 수혜 특구기업으로부터 별도의 참가비를 받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
- (민간부담금) 총 사업비는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으로 구성됨
 - 비영리법인*은 민간부담금 해당 없음
 - * 정부출연연구기관, 특정연구기관, 고등교육법 제2조 각호의 학교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대학
 - 기업의 경우, 총사업비 중 민간부담금 비율 및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 비율은 참여기업(주관·참여기관)의 수 및 유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적용함
 - 대기업 및 중견기업의 경우, 현물부담분 중 인건비 비율 하한 적용
 - * 대기업 인건비 현물부담액 50% 이내, 중견기업 70% 이내 편성

<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>

참여기업 유형	정부출연금 출연기준	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 기준
대기업	총사업비의 50퍼센트 이내	민간부담금의 15퍼센트 이상
중견기업	총사업비의 60퍼센트 이내	민간부담금의 13퍼센트 이상
중소기업	총사업비의 75퍼센트 이내	민간부담금의 10퍼센트 이상
그 밖의 경우	총사업비의 50퍼센트 이내	

* '중소기업'이란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기업

** '중견기업'이란 「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

*** '대기업'이란 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 제9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

< (예시)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신청 : 중소기업의 경우 >

구 분	정부출연금	민간부담금		총사업비
		현 물	현 금	
금 액	500백만원	153백만원	17백만원	670백만원
비 율	74.6%	22.8%	2.5%	100%

- (간접비) 총 사업비의 10% 이내로 책정

□ 사업 수행시 유의사항

- 공고문, 협약 및 관련 규정을 위배하거나 각종 제출자료 허위 기재·누락·지연 제출·미제출, 또는 최종평가결과 불성실 수행의 경우 과제 중단, 사업비 환수 또는 향후 동 사업 참여제한 등의 제재 조치할 수 있음
- 본 사업의 기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시 각종 홍보 및 안내자료 등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(주최),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(주관) 지원 사업임을 반드시 명기하여야 함

5. 평가절차 및 평가항목

□ 평가절차

- (선정 평가) 제출 서류 등 적합성 검토 후, 별도의 평가위원회 구성을 통한 서류 평가 및 발표평가(지원기관별 10분 발표 예정 - 추후 조정가능) 통해 선발
 - * 최종 선정 이후에도 평가위원회 권고사항을 수정계획서에 반영하지 않는 경우, 현장 실사 결과 민간부담금의 현물 내용 등이 상이한 경우 등 결격 사유가 확인(발생)될 경우 선정 취소
- (평가위원회) 글로벌 기술사업화 및 글로벌 진출지원 유관기관 전문가 7인 이상으로 구성되며, 평가위원 명단은 사전에 공개하지 않음

□ 평가일정(안) * 하기 일정은 내부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

절차	일정	주요내용
사업재공고 및 접수	~'18.09.14(금)	◦ 모집 재공고 및 사업신청서 접수
↓		
사업내용 평가	'18.9월4주	◦ 적합성검토 및 평가위원회 개최(서류·발표평가)
↓		
수행기관 확정	'18.9월4주	◦ 사업수행기관 확정
↓		
협약체결	'18.9월4~5주	◦ 사업계획서 보완 및 협약체결
↓		
사업수행	협약기간	◦ 사업수행
↓		
사업수행 결과보고	협약기간 종료 후	◦ 사업수행 최종결과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제출

□ 평가항목

구분	세부평가 항목	비중
수행기관 역량	주요 참여 인력의 경험·전문성 및 인력 운용 계획의 합리성	50
	해당 진출 지역의 해외 협력 네트워크 구축 보유 유무	
	해외 기술사업화 수행 경험 및 주요 성과	
사업 운영	해외 기술 사업화 프로그램의 적절성 및 실행 가능성	25
	사업비 구성 및 활용 계획의 합리성	
성과 목표	해외 기술사업화 필수목표의 구체성 및 도전성	25
	기타 자율 성과목표의 구체성 및 타당성	
합 계		100

* 상기 평가항목은 평가위원회 협의에 따라 변동 가능

6. 사업신청

☐ 사업계획서 및 관련 양식 교부

- 사업공고 :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(www.innopolis.or.kr) 홈페이지 공고
- 접수방법 : 현장 접수(우편접수 불가)
- 접수처: 대전시 유성구 엑스포로 123번길 27-5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406호 기획조정실 국제협력팀
- 접수마감일시 : '18.9.14(금) 16:00까지 도착분에 한함

☐ 제출자료

번호	서류명	부수	비고
1	사업신청서	원본(1부)+사본(7부)+전자파일	▪ 원본의 경우, 총괄책임자 날인 및 주관기관 직인 필수
2	발표자료	출력본(8부)+전자파일	▪ 선정평가용 국문발표자료(PPT,PDF) * 10분 발표분량, (해당시)서체/동영상파일 포함 ** 마감기한 후 수정불가
3	사업자등록증	사본(1부)	▪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
4	법인등기부등본	원본(1부)	▪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
5	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	사본(8부)+전자파일	▪ 최근 3개년 회계감사보고서/재무제표
6	납세증명서(국세/지방세)	원본(각1부)	▪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

* 전자파일은 CD/USB 등 저장매체로 제출

☐ 문의처

- 담당부서 :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기획조정실 국제협력팀
- 사업담당자

담당자	연락처	이메일
조두리 연구원	042-865-8902	enfl1113@innopolis.or.kr

7. 사업 신청시 유의사항

□ 지원제외대상

- 주관기관, 참여기관, 주관기관의 장, 참여기관의 장,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 등 정부지원 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
-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채무 불이행, 경영부실 등으로 정상적인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

□ 사업신청시 유의사항

- 접수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
- 신청서 및 기타 구비 서류가 미비한 사항의 경우,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의 수정 및 보완 요청에 15일 이내에 응하여야 함
- 허위 또는 부정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, 또는 등록취소/휴업/폐업/업무정지 등의 사실을 숨기고 지원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평가 및 협약 대상에서 제외
- 최종 선정 후 협약 체결시 추가 서류 제출 필요(추후 별도 안내 예정)
-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 사업 운영지침 및 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, 사업신청 및 선정이후 지침 및 기준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사업 신청기업에 있음